

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■ 요청대상

□ 대상자

- 2024.10.17. 이후부터 연체된 채권으로서, 계좌 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□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

- 2024년 10월 17일 이전부터 연체가 지속 중인 경우
-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■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□ 요청방법

- 영업점 신청: 회사 방문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서 접수
- 비대면 신청: 홈페이지, 서면, 이메일, 팩스를 이용한 채무조정 요청서 접수

□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

- 1) 채무조정요청서
 - 2) 채무조정안
 - 3) 변제능력에 관한 입증자료
 - 4) 개인신용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동의서
 - 5) 그 밖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- ※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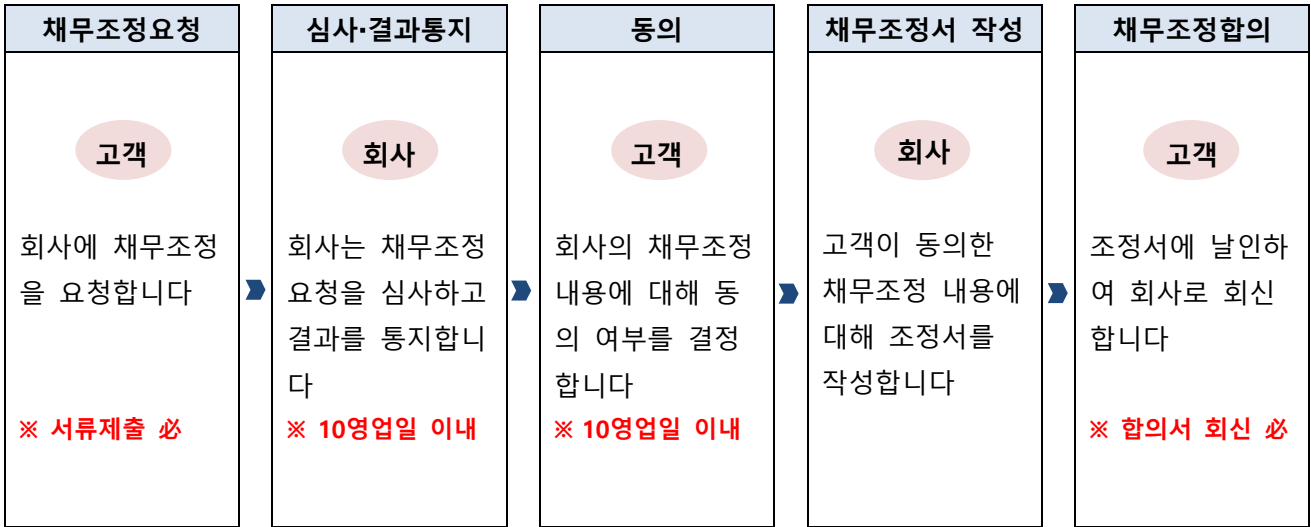
■ 채무조정 내용

< 채무조정의 방법 >

상 환 유 예	이자율인하	분 할 상 환	원리금감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1개월 단위 신청· 최장 3개월 이내· 정상이율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6개월 단위 신청· 최장 1년 이내· 약정이자율의 10% ~ 30% 범위에서 이자율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원리금(원금+이자)에 대하여 이자금액 0%~50% 감면 후 최장3년동안 분할상환(상환기간 중 이자율 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원리금(원금+이자)에 대하여 일괄(일시불)변제 시 원금 0%~20% 감면 또는 이자 금액에 대하여 50%~100% 감면

※ 요청하신 채무조정은 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조정 및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■ 채무조정 절차



■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▪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